



축단협, 축산업 회생대책 방안 대국회 건의

- 축산생산자단체 실무T/F 통해, 총 12과제 선정 · 제시 -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축산 7개 생산자단체(낙농, 한우, 양돈, 양계, 오리, 양봉, 양록) 중심으로 'FTA에 대응한 축산업 회생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24일(수) 각 정당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금번 축단협에서 국회에 건의한 대책방안은 총 12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0월 7일 축산생산자단체 워크숍에서 단체장들의 FTA와 관련 강경대응 결의 이후, 각 단체 정책책임자들로 실무 T/F를 구성,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축단협이 제시한 대책방안의 주요골자는, ▶ FTA 축산농민 소득보전 대책 사전 수립, ▶ 수입축산물 관세 목적세화, ▶ 농가부채 상환연기 및 경감대책 마련, ▶ 사료가격 안정대책 수립, ▶ 기업중심의 대형 패커 육성 정책 지양, ▶ 가축분뇨처리 지원 확대, ▶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선 등이다.

축산관련단체 이승호 회장은 지난 11월 17일 발표된 정부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은 임기응변식의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축산강국과의 FTA체결이 예상되고 있어, 피해 축종별 대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축산업 회생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산업 회생대책 방안이 요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축산생산자단체간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대국회/대정부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01 FTA 축산농민 소득보전 대책 사전 수립

1. 현황 및 문제점

■ 축산강국과의 FTA에 따른 막대한 피해 예상

- 11개 국책연구기관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한미 FTA 체결 후 15년간 제조업은 5조 5천억원의 생산이 증가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이 증가하나,
 - 농업분야는 6,700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농업분야 중 축산분야는 약 4,700억원으로 농업생산액 감소의 70%에 해당
- 한EU FTA 체결에 따른, 낙농품, 돼지고기를 비롯하여 축산피해 극대화
 - 낙농분야 관세철폐시 연간 1,028억원 피해예상 (낙농육우협회 연구용역 - 건국대 산학협력단 2007)
 - 양돈분야 관세철폐시 연간 4,902억원 피해예상 (대한양돈협회 연구용역 - 건국대 2010.1)
 - 양계, 오리, 양봉산업에도 큰 타격 예상
- 또한, 정부는 우유, 쇠고기, 양복, 양봉을 비롯 축산강국인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 진행중임

■ 축산농가 소득보전 대책 수립 필요

- 축산농가 소득보전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피해가 발생하면 보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으며,
 - 이에 대한 사전대책 마련은 전무한 상황으로, 축산농민 소득보전 대책 마련 절실
- 또한 피해보전 산출기준도 축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낙농의 경우 마릿수 기준을 퀼터 기준으로 개선 필요

2. 요구사항

■ 실질적인 축산농민 소득보전 대책 사전 수립 필요

- 소득보전 예산확보 및 사전 제시
- 피해보전직불금 보상기준 개선
 - 기준소득을 과거 5개년 평균소득의 90%로 상향조정하여 급격한 소득 감소에 대한 보전
 - 피해보전비율도 8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여, 기준소득 미달액에 대하여 전액 보상
- ※ 축종별 특성을 고려, 낙농의 경우 매년 삭감된 퀼터에 대해 리터당 순수익으로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직불금 지급

- 지원기간을 관세철폐 기간까지 연장 (주요품목 관세철폐 기간인 10년 이상으로 연장)
- 폐업지원금 및 회생자금 지원 실시
 - 폐업을 원하는 농가의 향후 5년간 소득 보상
 - 폐업농장 인수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폐업을 위해 농장 판매시 양도세 면제,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 폐업농가의 부채 탕감, 전업을 위한 회생자금 지원

02

수입축산물 관세 목적세화

1. 현황 및 문제점

- 경마매출의 하락으로 축산발전기금의 재원이 대폭 감소
 - 축산발전기금 출연액 : ('02) 1,834억원 → ('07) 991억원

〈연도별 매출 및 축산발전기금 등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01	'02	'03	'04	'05	'06	'07
경마매출액	60,163	76,491	61,753	53,303	51,548	53,111	65,401
축산발전기금	1,215	1,834	1,127	816	675	685	991

- 특히, '06년 기준 마사회 출연금은 축산발전기금 재원(기금운용수익 제외)의 96%를 담당하지만, 기금의 큰 폭 감소로 운용에 애로
- 2007년 농림수산물 관세 징수액은 2조 2,920억원이며, 이중 축산물에 대한 관세액은 7,996억원으로 농림수산물 관세 징수액의 34.9%를 차지하고 있음
- 축산부문 수입관세의 농특회계 전입액 대비 농특회계자금의 축산부문 투입액은 2007년 기준 19.1% 수준에 불과함
 - 2007년 축산부문 수입관세 농특회계 전입액 : 7,996억원
 - 2007년 농특회계자금 중 축산부문 투입액 : 1,526억원

2. 요구사항

- 수입축산물의 목적세화
 - 축산물 수입관세를 별도 기금화하여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축산농민의 피해보상에 사용토록 목적세화 추진

03 농가부채 상환연기 및 경감대책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사료값 폭등 등으로 축산농가가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04년 농가부채특별법 개정 이후 발생한 부채의 이자부담 및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수준의 경감대책 적용 필요
- FTA 대비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정부가 2004년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법' 개정으로 용자된 정책자금이 상환 도래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시기까지 일괄 재연장 필요
-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현실적으로 담보가 어려워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예사-양돈농가 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000두 미만	~2,000두 미만	~5,000두 미만	5,000두 이상	평균
금융부채	138.30	265.78	540.37	1,303.02	330.22
외상부채	34.83	50.63	215.56	337.31	72.82
계	173.13	316.41	755.93	1,640.33	403.04

* 2009년도 기준. 자료 :2008전업 양돈농가 경영 실태조사, 대한양돈협회

〈낙농가 부채 현황(2007년농기초조사연구/한국낙농육우협회)〉

- 부채규모
 - 1~2억원(26.6%), 5천만~1억원(24.0%), 1천만~5천만원(22.9%), 2억원 이상(22.7%)의 순으로, 1억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가 조사대상농가의 49.3%에 달함
 - 이를 연령별로 보면, 2억원 이상의 경우 20대가 66.7%로 가장 높고, 20대의 경우 5년 이내에 폐업하겠다는 비율이 12.5%에 달함
 - 부채문제로 인해 낙농을 포기하려는 농가비율이 14.1%에 달함

2. 요구사항

- 2004년 농가부채특별법 개정 이후 발생한 부채에 대해, 특별법과 동일한 경감대책(5년거치 15년상환, 1~1.5% 이자) 적용
- 담보가 어려운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신보 특례보증으로 축산농가당 일정 한도 내(예: 5억원) 자금 지원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법 개정(2004. 3. 5)으로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용자된 정책자금을 2014년까지(5년간) 일괄 재연장

04 사료가격 안정대책 수립

1. 현황 및 문제점

- '06년 말부터 사료값 폭등, '09년 인하폭이 미비하여, 축산농민 경영불안 지속
 - '06년 말부터 '09년초까지 약 60% 배합사료 가격 폭등, '09년 다섯 차례 인하하였으나
 - '09. 10월 현재, '06년 대비 여전히 약 35% 인상된 가격 수준임
 - 해상운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조사료 가격상승
 - 국제원유(原油)가격 상승으로 인한 해상운임 인상
- 축산물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높은 사료가격 유지는 축산농가 경영불안요인으로 작용
 - '06년 12월 대비 양돈 30%, 낙농 13.3% 폐업('08년 6월 기준)

<축종별 생산비중 사료비 비중>

(단위 : %)

구 분	비육우	우유	비육돈	계란	육계
사료비 비중	37.0	59.7	53.6	53.7	56.9

※ 자료 : 2008년도 축산물생산비(2009.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높은 해외의존으로 향후 곡물파동시 사료값 폭등 우려

- 우리나라 곡물구조상 모든 농산물을 국내에서 자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 전체 농산물을 자급하기 위한 경지소요량은 715만ha(2004년)이나, 경작면적은 326만ha에서 194만ha로 감소
 - 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곡물을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271만ha의 경작지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 경지면적은 축산물 자급을 위한 경지 필요량의 61%에 불과

2. 요구사항

- '08, '09년 농가 사료특별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 거치기간 또는 분할상환 기간 연장
 - 배합사료안정기금 설치 · 곡물 비축관리제도 운영
 - 국제곡물가 인상시, 현재로서는 완충장치가 없어 사료가격 인상시 농가부담으로 직결
 - 배합사료안정기금 설치로 사료값 폭등시 축산농민 부담 완화
 - 곡물 비축관리제도 시행으로 국제곡물가격 급등시 비축곡물의 적정 방출로 수급 안정
- ※ 일본의 경우, 배합사료안정기금(1968), 곡물비축제도(1974) 도입

■ 자급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지원

- 식량자급률 설정시, 사료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지원방안 마련
- 휴경논, 간척지 등을 활용한 조사료포 조성 및 생산면적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 새만금 등 간척지를 조사료포로 활용, 자급조사료 생산관련 직불제 도입 등

05 기업중심의 대형 패커 육성 정책 지향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에서는 생산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대형 패커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는 축산농가들을 대형 패커의 위탁농장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한 보완책이 없이 일방적 정책수립시,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우려됨
- 정부에서 벤치마킹 하는 대형 패커 육성정책은 축산물 수출위주의 국가에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철저한 기업식 축산정책을 하는 나라에 적용되는 정책임

2. 요구사항

- 기업형 대형 패커 지원보다는 조합형 패커 육성으로 전환
-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패커 지원정책으로 전환
- 축산농가 생존대책 선 마련을 전제 후 추진해야 함

3. 기대 효과

- 생산은 농가에서, 도축, 유통, 판매는 조합 또는 기업으로 분담하여, 축산농가의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

06 가축분뇨처리 지원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FTA에 따른 개방화로 인해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이 최대 현안과제로 부각됨
- 농가 경쟁력 집중화를 위해 농가가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원적 해결방안 마련 필요
- 가축분뇨 처리시 ▲처리시설 비용 과다 ▲시설관리의 한계 ▲퇴·액비 품질 불균일 ▲경종농가 신뢰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2. 요구사항

- 축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문제를 SOC 국책사업으로 추진
- 공동자원화·공공처리시설 통합 처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 가축분뇨 하수관거에 연결 법제화(공공처리장에서 가축분뇨 처리)
-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해, 지역단위(시군) 퇴비처리 영농조합 형태로 토지구입, 시설자금 지원 대책 마련

07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1.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금액의 확대

-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축산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연간 1,800만원과 축종별 공제두수에서 발생된 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제받는 금액을 연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하고 공제두수도 다음과 같이 확대도록 개정함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 관련)〉

(단위 : %)

가축별	현 행	개 정(안)	증가두수
젖소	30마리	80마리	50마리
소	30마리	80마리	50마리
돼지	500마리	1,000마리	500마리
닭	15,000마리	25,000마리	10,000마리
오리	15,000마리	25,000마리	10,000마리
양록	-	80마리	신규

2. 목장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목장농지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없는 바, 농지의 양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목장의 양도나 이전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도록 함
- 이를 위해 조세특례한법 제68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농지외에 “축산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개정함

3. 목장용지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이와 같이 목장용지의 대토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개정함
-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농지와 같은 내용으로 목장용지에 대한 대토를 감면대상이 되도록 추가함

4. 목장용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현재 목장용지를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세금의 납부대상이지만 납부시점만 차후로 연기해 줌)되는데 반면 농지의 현물출자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바, 목장용지도 농지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도록 개정함
-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을 농지, 초지 이외에 목장용지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정함

5. 목장용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완화

-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목장용지에 대한 기준을 사육두수에 두당 일정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만 규정하고 있어 축사를 임대하거나 매각을 위해 사육을 중단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인 건축물면적의 일정면적 내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함
- 이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0에 목장용지에 대한 기준을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 규정과 일반건축물에 대한 기준에 의한 면적 중 큰 면적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도록 개정함

6. 축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 축산업의 초지를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으로 하면서 나머지 축산업 자산 전체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 바, 축산업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도록 하면서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
- 이를 위하여 상속세 및 종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함

7. 축사건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 축사건축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도록 개정하여 축산업자들이 축사를 건축하는데 건설업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사비의 부담을 줄이고, 계산서의 정상적인 발행을 통한 탈세문제의 해결을 도모함.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축산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역”을 신설하도록 건의함

8. 위탁사육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 현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축산물을 위탁사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도록 세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변칙 또는 탈법처리하고 있던 위탁사육에 대한 세무처리를 양성화하고 세부담을 줄이도록 함
-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3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을 농업법인에서 농민과 농업법인을 포함하는 농업경영체로 변경하도록 개정함

9.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인 축산기자재의 추가

- 분만틀 등 현재 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축산기자재를 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함
- 이를 위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누락된 축산기자재를 추가함

10. 가축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설

- 가축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축산시설물과 동일한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가축의 생존 가능연수를 훨씬 초과하는 연수이기에 가축의 변식기능연수에 맞추어 내용연수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1호에 가축에 대한 내용연수를 소 및 말은 3년, 기타의 가축은 2년으로 하는 규정을 삽입함

11. 축산용건축물에 대한 내용연수의 단축

- 축사에 대한 내용연수가 철근콘크리트조 및 이와 유사한 구조는 40년,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구조는 20년으로 되어 있는 반면, 공장이나 창고에 대하여는 이러한 내용연수의 절반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축사

에 대하여도 공장과 같이 내용연수를 절반으로 단축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함

- 이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의 내용연수를 50%로 단축하는 규정에 “축산용 건물”을 삽입함

12. 축산업의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기업승계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면이 배제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바,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업종도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이 되도록 개정함
-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의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감면대상에 “축산업을 포함한다”고 삽입함

13. 도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 가축의 도축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개정하여 축산물의 제조원가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낮추어 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면세대상에 “가축을 도축하는 용역”을 신설하도록 건의함

14. 농업법인의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의 허용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각각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감면을 받으면 축산시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바, 법인세의 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게 개선하여 법인세의 부담을 줄이도록 함
- 이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감면대상에서 농업법인의 법인세감면을 삭제함

15. 농업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요건 완화

- 농업법인에 축산용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되는 데 그 과세이연요건에 목장용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농업지와는 달리 축사의 경우에는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어도 직접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현실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사

제하도록 개정함

-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농업인의 요건에 “축산업 자는 거주지에 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함

16.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적용의 배제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는데 이것이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50%의 감면을 모두 적용받지 못하는 농업회사법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저한세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개정함
- 이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4호의 최저한세적용대상에서 농업회사법인의 감면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함

17. 농업법인의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감면

-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전액 면제되는데 설립 이후 증자하는 때에는 감면되지 않고 있는 바, 증자에 대하여도 등록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개정함
- 이를 위해 지방세법 266조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증자등기”를 추가함

18.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기간의 확대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감면기간이 법인설립 후 이익이 발생한 연도 및 이후 3년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폐업시까지 계속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법인세의 감면액은 산출세액의 50%임)
-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농업회사법인의 감면규정을 기간의 제한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함

19. 영농조합법인의 감면소득의 확대

-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원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를 2,4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함
-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감면대상금액을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변경함

08 축사시설 경쟁력 확보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전업화, 규모화 정책에 따라 축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축산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음
 - 주요원인 : 건폐율, 까다로운 허가 절차 및 요건, 세금(취득세, 등록세) 문제 등
- 축산업등록제 도입 당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요구에 따라 '축사' 대신 '가축 사육시설' 개념으로 등록조치된 바 있음
 - 그 당시, 농식품부는 농가 불안감 해소를 위해 등록정보에 대해 목적 외 사용을 금지키로 약속한 바 있음
- 그러나, 일선 시군 농가 등록정보 목적 외 사용(환경·건축단속) 사례 발생, '축사 두당 사육면적 준수의무',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파라 치 기승으로,
 - 축산농가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FTA대비 축산업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폭설 등 재해보상,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정책지원사업에서 축산업 등록(가축사육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 무허가 축사 보유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정책적 소외를 당하고 있는 상황임

2. 요구사항

- 축사시설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조기집행
 - 가설건축물 인정범위 확대, 건폐율 상향조정
 - 무허가 축사 양성화 검토, 무허가 축사 철거 및 신축 시 정책자금 지원
- 각종 정책사업 대상을 축산법(축산업등록제)상 가축사육시설 등록기준으로 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09 간척지를 활용한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1. 현황 및 문제점

- 도시개발, 환경규제 강화 등 축산경영여건의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축산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확보여부가 필수적이나, 도시개발과 환경 규제 등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적정 장소 부족으로 어려움 가중

- '07년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에도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각종 민원으로 인하여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임
- 서해안 간척지(새만금, 시화호 등) 등에 축사 이전도 간척지 이용계획으로 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임

2. 요구사항

- 안정적 축산 영위를 위해서 일정지역(간척지, 농지 등)에 친환경축산단지로 지정하여 축사이전이 가능토록 제도화 필요
- 국토이용개발 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10

도축장 구조조정 신속 추진 및 축산물 소매망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 관심은 안전한 축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믿고 구입
- 가축은 반드시 도축과정을 거쳐야하고 소비자는 소매유통을 통해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운영 중에 있는 94개의 도축장은 과다경쟁으로 가동률(45%수준)이 저조하고 위생·안전수준이 미약하며 소매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됨

2. 요구사항

-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시설·안전수준을 선진국 이상으로 제고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 도축장의 구조조정으로 부분육, 냉장유통 실현
 - 일정한 수의 도축장을 폐쇄하고 폐업자금 지원
 - 잔존 도축장은 시설보강으로 도축뿐만 아니라 부분육기공시설 지원
-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한 필요예산 확보하여 강력한 추진
- 농축산물 소비자 소매유통시설 확충으로 생산자단체가 20%를 점유
 - 생산자와 직결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소매유통시설이 소매유통의 20%를 점유하기 위한 대형 소매점 확보를 산지유통시설과 같은 수준에서 지원

11 축산용 전기세 부담 경감

1. 현황 및 문제점

- 양곡생산용 전력이 농사용전력(갑)에 해당되는데 반해, 축산용은 농사용 전력(병)에 해당되어 더 많은 전력요금을 납부하고 있음
 - 전기세 구분 : 주택용전력(저압/고압), 일반용전력(갑/을), 산업용전력(갑/을/병), 교육용전력, 가로등, 심야전력(갑/을), 농사용전력(갑/을/병)
 - 농사용 전력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 관련)〉

(단위 : %)

구분	내 용	기본요금(원/kW)	전력량요금(원/kWh)
갑	양곡생산용 전력(양수기, 배수펌프 등)	340	20.60
을	육묘 또는 전조재배용 전력	930	26.30
병	기타 농작물 재배, 축산·양잠·수산물 양식용 전력, 농수산물 건조	1,070	36.40

- 아울러, 동물을 다루는 축산시설의 특성상 하루의 대부분 전력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450시간 추가요금 제도에 적용되어 초과요금을 납부하고 있음
 - 450시간 추가요금 제도
 -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1kW × 450시간(15시간/일 × 30일)]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 전력량에 대해 150% 추가 적용(즉, 2.5배 부과)
 - 》적용대상 : 저압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농사용전력(병)
 -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과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가압상수도, 비상재해복구시설, 사설독서실, 자동판매기운영업, 무선기지국 및 24시간 편의점 등 이와 유사한 고객, 기타 현장조사 결과 전기사용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한 고객 등

2. 요구사항

- 축산용을 농사용(병)에서 농사용(갑)으로 조정하여 생산비 절감 도모

12 석면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엄격한 석면 처리 규제
 - 석면함유 1%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노동부장관 허가 없이 해체, 제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엄격하게 규정
- 석면 슬레이트 처리장이 전국에 2개소밖에 없어 폐기물 처리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됨
 - 폐기물 처리비용
 - >순수 슬레이트 처리 : 3.3m² 당 5만원 ~ 6만 5천원
 - >슬레이트 + 우레탄 단열재 부착 : 3.3m² 당 7만원 ~ 7만 5천원
 - ※ 지역에 따라서 운반비 등에 처리비용이 영향을 받음.
 - 조달청 일위대가 : 3.3m² 당 146,000원
- 축사 상당수가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으나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보조 받더라도 과도한 규제 및 처리비용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2. 요구사항

- 철거 및 처리비용 국비 100% 지원.
- 각 도별 축산단체별로 폐기물처리업체 3개소씩 선정하여 위탁처리(처리비용 절감 방안임)
- 매립장 및 처리장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므로 매립장 확충 필요성 문제 제기 및 실행요구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축산 농가의 축사와 창고 등 슬레이트 부속 건물에 대해 보조금 지원 요청

